

의안 번호	제3681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,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위원선정 방식에 대한 각 읍·면·동별 자율성 부여
- 나.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규정 개정(안 제20조)
 - 주민자치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 연임횟수 개정
- 다. 그 밖에 용어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